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연봉규정

제1장	총	칙	1
제2장	적용대상자및연봉계약체결자		2
제3장	연 봉 의 계 산 및 지 급 방 법		2
제4장	연 봉 외 수 당		4
제5장	퇴 직 급 여		4
제6장	재 심 청 구 및 처 리		6
제7장	보	칙	6
부 칙		6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연봉규정

제 정	2000. 3.14	개정	2021. 1. 14(규정 제223호)
개 정	2000. 9. 5(규정 제19호)		2021. 4. 1(규정 제229호)
	2000.12. 5(규정 제26호)		2022. 1. 13.(규정 제238호)
	2003. 8. 4(규정 제56호)		2022.11.30.(규정 제242호)
	2004. 1.13(규정 제61호)		2023. 1. 12.(규정 제247호)
	2004. 9. 6(규정 제63호)		2023. 6. 29.(규정 제254호)
	2007. 3.30(규정 제78호)		2024. 1. 11.(규정 제259호)
	2014.12.22(규정 제155호)		
	2017. 1. 1(규정 제184호)		
	2017. 2. 23(규정 제188호)		
	2017. 3. 30(규정 제189호)		
	2018. 2. 22(규정 제196호)		
	2018.11. 1(규정 제203호)		
	2020. 1. 16(규정 제21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상근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동안 받는 임금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성과연봉 및 기타 및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매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기본연봉에 기본가산금을 합한 금액이 익년도 기본연봉이 된다.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3. “기본가산금”이라 함은 기본연봉에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상률은 개인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재원은 인건비 인상액을 총액으로 한다.
4. 성과연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 및 개인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 총액의 15% 이상을 말한다.

5.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급이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삭제)[개정 2018. 2. 22.]
7. 기본연봉 외 수당은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과 기타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정업무수당, 직책수당, 안전관리수당,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을 말한다.[개정 2017. 2. 23., 2023. 6. 29.]
8. 승진가산금이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강임감급이란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기본연봉에서 차감하여 금액을 말한다.
10. 통상임금은 기본연봉과 기타수당 중 특정업무수당, 안전관리수당, 직책수당으로 한다.
11. 평균임금은 사유발생 직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 적용대상은 상근임원 및 7급 이상 직원 및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 체결자) ①이사장의 연봉계약은 양천구청장과 체결한다.
 ②상임이사(본부장)과 직원의 연봉계약은 이사장과 체결한다.

제 3 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 지급일) ①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경영평가급은 연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2. 22.]

제7조(계산기간) ①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 기본연봉은 해당연봉을 월할 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제8조(신규채용자의 연봉) 신규채용자에 대한 경력환산 및 기본연봉 계산은 “별표 3”와 같이 한다. 다만, “별표 3”에 해당되지 않는 신규채용자의 경우 “별표 1”의 직급별 기본연봉에서 채용직급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으로 한다.

제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①기본연봉 인상액은 정책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
되, 5단계로 평가하여 차등 인상한다.

②기본연봉 인상률의 전년도 기본연봉에 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은 “별표 4”와 같으며,
기본연봉에 차등인상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누적방식으로 운영하되 정부 정책변동 시
조정 할 수 있다.

③기본연봉의 인원배분 비율은 특정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이
상으로 배분하며 정부 정책변동 시 조정 할 수 있다.

제10조(성과연봉의 한계액) ①경영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7. 2. 23., 2018. 2. 22]

②경영평가급의 최저와 최고의 지급률 차등폭은 50% 이상으로 하고 정부 정책변
동 시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③(삭제)[개정 2018. 2. 22]

④성과연봉의 인원배분 비율은 특정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소 10%이
상으로 배분하며 정부 정책변동 시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퇴직 시에는 기본연봉월액, 내부평가급 및 기타수당은 일할계산하고 시간외근
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5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와 사망한 때에는
당월 기본연봉월액 전부를 지급한다.[개정 2017. 2. 23. 2020. 1. 16,
2023. 6. 29.]

2. 직위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1개월~3개월 까지는 기본연봉의 70%를, 4개월
부터는 기본연봉의 50%만 지급한다.

3. 사건 계류중인 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미지급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4. 승진 시 현 기본연봉에 3%를 곱하여 책정한다.

5. 강임 감급액은 기본연봉에 3%를 삭감한다.

제12조(결근자의 연봉)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결근한 직원과 무계결근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수분의 기본연봉과 기타
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봉의 감액) 연봉감액자는 “별표 2”과 같다.

제14조(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한다.

1. 관리직, 지도직, **기술직** : 1년차 : 10%, 2년차 : 20%, 3년차 : 25%
〔개정 2023. 1. 12., 2024. 1. 11.〕

2. (삭제 2023. 1. 12.)

제15조(연봉의 일할계산 등) 연봉의 일할계산은 월지급액의 그달의 일수분의 1로 하며, 1시간 계산은 월지급액의 209분의 1로 한다.〔개정 2023. 1. 12.〕

제4장 기본연봉 외 수당 및 성과급

제16조(기본연봉외 수당) ①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②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팀장에게 사전승인을 득하고 실제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단, 부서장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4.〕

③공무원 신분으로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보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제17조(평가급) ①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해당연도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 1. 14.〕

1. 평가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받은 자

2. 중대비위(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채용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제18조(내부평가급) (삭제)〔개정 2017. 2. 23., 2018. 2.22〕

제19조(예산성과급) 사업비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방법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제20조(수당의 감액) 임직원이 징계등 기타사유로 연봉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급여

제21조(퇴직금의 지급) ①퇴직급여는 근속연수가 1년이상인 직원이 퇴직(사망포함)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퇴직급여는 퇴직전 3개월을 평균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신설 2022.11.30]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11.30]

⑤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11.30]

제22조(퇴직급여 총당금) ①퇴직급여를 총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 각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총당금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퇴직급여의 총당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관리하되 매 분기별로 납부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의 요건과 정산방법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로 정하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23조(근속기간의 계산) ①연수가 초과되는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단, 직원이 재계약 하여 계속 근무하는 기간은 근무연수로 산정한다.

②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부상과 육아, 가족 돌봄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연수에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24조(퇴직급여의 수령자) 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5조(신분변경의 경우) 직원이 임원으로 승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명예퇴직수당) ①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신청기간 중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29.]

②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별표 8”에 의하여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③명예퇴직원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직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직원
3.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직원

④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27조(조기퇴직수당) ①1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조기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기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기퇴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 연봉제규정에 의한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퇴직수당으로 하여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

③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8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1주일 이내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불복 시 연봉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30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임원의 경우는 양천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인, 직원의 경우에는 공단소속 3인 이상의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의결은 출석위원의 다수결로 정한다.

제31조(재심결과처리) ①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명기하여 위원회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연봉재심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자는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3조(보고의무) 이사장은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폐지) 규정 제174호 보수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규정의 준용)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제규정상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연봉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경과규정) 기본연봉인상률과 내부평가평가급의 차등은 2017년 개인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실시 후 2018년부터 적용하며, 2017년은 차등 없이 적용한다.

부 칙(2017. 2. 23)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30)

이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기본연봉인상률 차등은 2018년 평가제도 확정 및 평가가 시행된 이후 2019년부터 적용한다.
 ②임원에게는 기 체결된 경영성과계약의 연봉구성항목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2018. 11.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16)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8.)

이 규정은 2022년 11월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4조(임금피크제)의 적용은 현재 시도직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종전 규정대로 정년 5년 전부터 퇴직일까지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25%, 4년차 30%, 5년차 35%를 적용하고, 규정개정 이후 임금피크제에 처음 해당되는 시도직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5]의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은 2024년부터 지급한다.

부 칙(2024. 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재규정상의 '기능직'을 '기술직'으로 한다.

【별표 1】 기본연봉 지급 기준표(제9조 2항 관련)(개정 2018.11. 1, 2020. 1.16, 2021. 1. 14., 2022. 1. 13., 2023. 1. 12., 2024. 1. 11.)
(단위:천원)

직급별	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3급	58,133	39,777
4급	55,110	37,647
5급	51,437	34,840
6급	46,695	31,623
7급	41,951	29,300

【별표 2】 [개정 2022.11.30.]

보수감액 지급표

구분	정직	감봉	휴직
감액할 금액	기간 중 임금 전액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준용한다.	기본연봉의 5할

【별표 3】 신규채용 경력 임·직원 기본연봉 지급표 [개정 2018.11. 1, 2020. 1. 16., 2021. 1. 14., 2022. 1. 6., 2023. 1. 12., 2024. 1. 11.]

□ 임원

(단위:천원)

구분	한계액	비고
이사장	83,917 이하	
상임이사	75,992 이하	

□ 직원

(단위:천원)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가	48,955	46,378	43,139	39,159	35,626
나	46,660	44,195	41,064	37,275	34,044
다	44,366	42,012	38,989	35,391	32,463
라	42,071	39,830	36,915	33,507	30,881
마	39,777	37,647	34,840	31,623	29,300

최초임용 시 경력별 등급표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가	13년 초과	13년 초과	12년 초과	11년 초과	10년 초과
나	10~13년	10~13년	9~12년	8~11년	7~10년
다	8~9년	8~9년	7~8년	6~7년	5~6년
라	6~7년	6~7년	5~6년	4~5년	3~4년
마	5년 이하	5년 이하	4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경력환산 기준표(실근무 경력에 한함)

적 용 대 상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군 복무기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 주식회사(종업원 300인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자 ○ 금융기관 :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각종학교(유치원제외)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상 기업체 또는 법인체 : 해당분야 종사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 상용 임시직 종사자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표에 규정된 환산율에 다음 각 호를 곱하여 적용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직종 경력 100% 2. 유사 직종 경력 70% ○ 경력기간 환산은 1년을 년수의 단위로 한다. ○ 동일한 경력이 각 호에 중복될 때에는 유리한 적용률로 경력환산을 한다.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7. 2. 23, 2018. 2.22]

기본연봉 차등인상율표

개인성과평가결과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상율	$\alpha + 0.5\%$	$\alpha + 0.25\%$	α	$\alpha - 0.25\%$	$\alpha - 0.5\%$

※ α : 당해연도 정책인상률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인상률

【별표 5】 [개정 2017. 2. 23, 2017. 3. 30., 2021. 1. 14., 2021. 4. 1., 2022. 11.30, 2023.6.29.]

기본연봉외 수당 지급기준

구분	수당별	지급기준	지급액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사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월통상임금 × 1.5/209 × 시간
	야간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직원에 대하여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월통상임금 × 0.5/209 × 시간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월통상임금 × 1.5/209 × 시간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직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월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
기타수당	가족수당	1.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2. 세부지급 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3. 직위해제, 휴직, 징계처분자로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지급대상 및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특정업무수당	· 예산 · 결산 · 계약 · 감사 · 노사 · 경영평가 · 안전보건관리 업무담당자	· 월 80,000원
	직책수당	· 부서장 보직 시 매월 기본연봉월액의 비율 지급	· 기본연봉월액 × 0.21 · 파견 공무원의 경우는 양천구의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안전관리수당	1. 법률에 의해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직원에게 지급한다. 2. 두 종류 이상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된 경우 각각 종류별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전기안전관리자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월 100,000원 · 가스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 월 30,000원 · 방화관리자 : 월 30,000원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	· 육아휴직직원의 업무대행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지급금액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6】

연 봉 계 약 서

I.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	--	-------------	--	-----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연봉금액 :

기 본 연 봉	금	원(월	원)
---------	---	-----	----

4. 연봉계약기간중 연봉조정 : 정부정책에 의거 연봉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적용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5.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조정하여 매년 재계약한다.

6. 근무시간 : 주40시간으로 함(평일 8시간 근무 기준)

7. 기 타

-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관련법규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다.

년 월 일

계약대상자 : 소속 직급 성명 : (인)

계약체결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별표 7】 (2017. 2. 23, 2018. 2. 22)

연봉 산출 내역

연봉제 구성체계			
구분		지급시기	지급기준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매월 (총 기본연봉액의 1/12)	
성과연봉	경영평가급	경영평가결과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확정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
	(삭제)	(삭제)	(삭제)
기타수당	급식보조비	매월	별표5에 따른다
	가족수당	매월	
	자녀학비보조금	학기별	
	안전관리수당	매월	
	특정업무수당	매월	
	직책수당	매월	

【별표 8】 (2017. 2. 23)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이상 ~5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액 × 1/2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당시 월봉급액 × 1/2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 월봉급액의 산정기준 : 기본연봉월액의 85%의 90% ※ 정년 잔여월수(퇴직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별표 9】 (2017. 2. 23)

환수금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 월봉급액의 산정기준 : 기본연봉월액의 85%의 90%)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당시 월봉급액 × 1/2 × 정년잔여월수
2.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별표 10】

자녀 학비 보조수당 신고서

부양 의무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학생상황	성 명	학교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 소재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1】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의무 직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p>특기사항 :</p> <p>* 본 란에는 부양가족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 원·지방공단 직원 등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 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p>					
<p>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 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 가족을 신고합니다.</p> <p>첨부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p>					